

통일평화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술지 간행 규정

2009년 5월 6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 『통일과평화』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연구소 실행위원회가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 연구소 실행위원회가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회의 및 운영)

1. 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기 2회 총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의사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위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제 4조 (권한)

1. 위원회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논문심사,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 여부 판정,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소위원회는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일부 권한과 업무를 위임받아 실행할 수 있으며, 실행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제5조 (학술지 간행)

1.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명칭은 『통일과 평화』, 영문으로는 *Journal of Unification and Peace Studies*로 한다.
2. 『통일과 평화』는 연간 2회 발행하며, 각각 6월 15일, 12월 15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집 발간 횟수와 체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

1. 위원회는 『통일과 평화』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제출된 논문은 비밀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당 3인으로 한다.
4.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편집 방침과 평가자의 심사 의견에 기초하여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 ‘수정’의 판정을 받고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논문에 대한 채택 여부는 별첨 "논문심사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평가자의 심사 의견,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가 결정하고, 원고 제출자에게 판정내용과 심사내용을 통보한다.
6. 심사위원의 평가가 불일치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부지침에 따른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심사결과
가	가	가	게재가
가	가	수정	
가	가	부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부	제4심
수정	수정	부	
가	부	부	게재불가
수정	부	부	
부	부	부	

7. 위원회는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9. 선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본 연구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을 제출할 경우는 원고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